

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

발의연월일 : 2008. 9. 18.
발 의 자 : 최광옥 위원외 1인

1. 주 문

- 초대형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 - 활동기간 : 2008. 9. 18. ~ 2009. 6. 30.
 - 위 원 수 : 9인 이내

2. 제안이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지선정 후 30년간 5조 6,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82조원의 생산증가 및 38만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
- 우리도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및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의 부상과 생명산업의 연계 확산을 통한 바이오 경제 파급효과 증대를 위하여
-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서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

관 계 법 규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